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중개정

산업자원부고시 제2002-61호(2002. 6. 20)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 고시합니다.

2003. 1.

산업자원부장관

제2-2-18조제2호가목(1)중 “ $A = \frac{W}{CKP_1\sqrt{\frac{M}{T}}}$ ”를 “ $A = \frac{0.1W}{CKP_1\sqrt{\frac{M}{T}}}$ ”로 하고, 동목 (2)중

“ $A = \frac{W}{548KP_1\sqrt{\frac{k}{k-1} \left\{ \left(\frac{P_2}{P_1}\right)^{\frac{2}{k}} - \left(\frac{P_2}{P_1}\right)^{\frac{k+1}{k}} \right\} \sqrt{\frac{M}{T}}}}$ ”를 “ $A = \frac{W}{5592KP_1\sqrt{\frac{k}{k-1} \left\{ \left(\frac{P_2}{P_1}\right)^{\frac{2}{k}} - \left(\frac{P_2}{P_1}\right)^{\frac{k+1}{k}} \right\} \sqrt{\frac{M}{T}}}}$ ”로,

“kg/cm²”를 각각 “MPa”로 하며, 동호나목중 “ $A = \frac{W}{5070K\sqrt{PG}}$ ”를 “ $A = \frac{W}{5070K\sqrt{10PG}}$ ”로, “kg/cm²”를 “MPa”로 한다.

제2-2-22조제1호중 “5~6kg/cm²”를 “0.5~0.6MPa”로, “50cc × (호칭경mm/25mm) (330cc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30cc)”를 “50ml × (호칭경mm/25mm) (330ml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30ml)”로 한다.

제2-3-5조제2호나목중 “30kg/mm”를 “294N/mm”로 한다.

제2-3-6조제1항제1호중 “ $P = \frac{W_h}{D \times b} \times C$ ”를 “ $P = \frac{0.01W_h}{D \times b} \times C$ ”로, “kg/cm²”를 “MPa”로, “kg”을 “N”

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kg/mm”를 각각 “N/mm”로, “kg/mm”를 “N/mm”로 한다.

제2-3-14조제1호의 표의 규격란중 “210~240kg/cm²”를 “21~24MPa”로 한다.

제2-3-18조제5항의 [표 1]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호중



“ $q_a = \frac{1}{3}(\alpha CN_c + \beta \gamma_1 N_r + \gamma_2 D_f N_g)$ ”를 “ $q_a = \frac{1}{3}(\alpha CN_c + \frac{1}{10^6} \beta \gamma_1 N_r + \gamma_2 D_f N_g)$ ”로 하며, 동항제2호의 다음중 “t/m²”를 각각 “MPa”로, “ $\frac{60M}{\pi D^2(3H+D)}$ ”을 “ $\frac{0.06M}{\pi D^2(3H+D)}$ ”로, “kg · cm”를 “N · cm”로 하고, 동항의 [표 3] 다음의 비고란중 “t/m²”를 각각 “N/m²”로, “t/m²”를 “MPa”로 한다.

[표 1] 지반의 종류에 따른 허용지지력도

지반의 종류	허용지지력도(MPa)	지반의 종류	허용지지력도(MPa)
암반	1	조밀한 모래질 지반	0.2
단단히 응결된 모래층	0.5	단단한 점토질 지반	0.1
황토흙	0.3	점토질 지반	0.02
조밀한 자갈층	0.3	단단한 룸(loam)층	0.1
모래질 지반	0.05	룸(loam)층	0.05

제2-3-19조제2항제1호중 “t”를 각각 “N”으로, “t/m²”를 “N/m²”로, “t · m”을 “J”로 하고, 동항제2호중 “t”를 “N”으로, “t/m²”를 “N/m²”로 한다.

제2-3-22조제2호중 “3.5kg/cm²”를 “0.35MPa”로 한다.

제2-3-29조제2호중 “2.5kg/cm²”를 “0.25MPa”로 한다.

제2-3-34조제3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저장탱크의 압력 프로판	0.2 이상 0.4 미만 90%	0.4 이상 0.7 미만 80%	0.7 이상 1.1 미만 70%	1.1 이상~ 60%
저장탱크의 압력 부탄	0.1 이상 0.25 미만 90%	0.25 이상~ 80%		
비고 : 압력의 단위는 MPa로 한다.				

제2-4-2조제4호가목(7)중 “30kg/cm²”를 “3MPa”로 하고, 동목(8)중 “18kg/cm²”를 “1.8MPa”로 하며, 동호나목(1)중 “10kg/cm²”를 각각 “1MPa”로 한다.



제2-5-15조제1호중 “ $t = \frac{PD^o}{200\sigma_a\eta + 0.8P}$ ”를 “ $t = \frac{PD^o}{2\sigma_a\eta + 0.8P}$ ”로 하고, 동조 제2호 중 “ $t = \frac{D^o}{2} \left(1 - \sqrt{\frac{100\sigma_a\eta - P}{100\sigma_a\eta + P}} \right)$ ”를 “ $t = \frac{D^o}{2} \left(1 - \sqrt{\frac{\sigma_a\eta - P}{\sigma_a\eta + P}} \right)$ ”로, “kg/cm²”를 “MPa”로, “kg/mm²”를 “N/mm²”로 한다.

제2-5-16조제2호중 “10kg/cm²”를 “1MPa”로 하고, 동조제3호나목(1)(가)중 “16kg/cm²”를 “1.6MPa”로 하며, 동목(1)(나)중 “10kg/cm²”를 “1MPa”로 하고, 동목(2)중 “30kg/cm²”를 “3MPa”로 하며, 동호다목(1)(가)중 “2kg/cm²”를 “0.2MPa”로 하고, 동목(1)(나)중 “16kg/cm²”를 “1.6MPa”로 하며, 동목(2)(가)중 “16kg/cm²”를 “1.6MPa”로 하고, 동목(2)(나)중 “11kg/cm²”를 “1.1MPa”로 하며, 동목(3)(가)중 “24kg/cm²”를 “2.4MPa”로 한다.

제2-6-6조제2호가목중 “0kg/cm²이상 0.5kg/cm²이하”를 “0MPa이상 0.05MPa이하”로 한다.

제2-6-8조제3호중 “21kg · m내지 41kg · m”를 “205.9N · m내지 402.1N · m”로 한다.

제2-8-4조제7항중 “재충전횟수 및 공급내역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를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충전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2-3조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SDR	압력
11 이하	0.4MPa
17 이하	0.25MPa
21 이하	0.2MPa
여기서 SDR(standard dimension ration) = D(외경)/t(최소두께)	

제6-3-2조제2호나목(1) 및 동목(2)중 “0.5kg/cm²”를 각각 “0.05MPa”로 하고, 동조제3호나목중 “30kg/cm²”를 “3MPa”로, “18kg/cm²”를 “1.8MPa”로 하며, 동조제4호나목(4)중 “30kg/cm²”를 “3MPa”로, “18kg/cm²”를 “1.8MPa”로 하고, 동조제5호나목중 “30kg/cm²”를 “3MPa”로, “18kg/cm²”를 “1.8MPa”로 하며, 동조제6호나목중 “30kg/cm²”를 “3MPa”로, “18kg/cm²”를 “1.8MPa”로 한다.

제7-2-3조제2호(1)중 “58kg/mm²”를 “568N/mm²”로 한다.

제7-2-5조제3호의 표의 최고사용압력란중 “3kg/cm²”를 각각 “0.3MPa”로 하고, “0.3kg/cm²”를 “0.03MPa”로 한다.



제7-2-6조제2호중 “840mmH₂O이상 1,000mmH₂O이하의 압력(조정기의 조정압력이 330mmH₂O이상 3,000mmH₂O이하의 것은 3,500mmH₂O이상의 압력)”을 “8.4kPa이상 10kPa이하의 압력(조정기의 조정압력이 3.3kPa이상 30kPa이하의 것은 35kPa이상의 압력, 30kPa초과의 것은 최고사용압력의 1.1배 또는 35kPa중 높은 압력)”으로 한다.

제9-1-1조중 “10kgf/cm²”를 “1MPa”로, “100mmH₂O”를 “1kPa”로 한다.

제9-1-2조제2호가목중 “1.0~10kg/cm²”를 “0.1~1MPa”로 하고, 동호나목중 “400~10,000mmH₂O”를 “4~100kPa”로 하며, 동호다목중 “100~400mmH₂O”를 “1~4kPa”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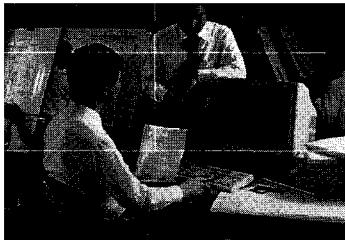
제9-1-4조 제6호 마목중 “kg/cm²”를 “MPa”로 하고, 동호 바목중 “mmH₂O 또는 kg/cm²”를 “kPa 또는 MPa”로 하며, 동호자목중 “kg/cm² 또는 mmH₂O”를 “MPa 또는 kPa”로 한다.

제9-1-8조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3호 압력용기중 도시가스정압기에 사용되는 필터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압력조정기에 내장된 것은 제외한다.”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3호 압력용기에서 제외되는 것 중 도시가스정압기에 사용되는 필터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압력조정기 및 매몰형정압기에 내장된 것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9-1-10조제1호라목중 “0.5kg/cm²”를 “0.05MPa”로 하고, 동조제2호나목중 “10kgf/cm²”를 “1MPa”로 하며, 동조제3호가목중 “9.9kg/cm²”를 “0.99MPa”로 한다.

제9-1-14조중 “330mmH₂O”를 “3.3kPa”로 한다.

제9-1-15조 제2호바목의 표의 시험조건란중 “0.2kg/cm²”를 각각 “0.02MPa”로, “8kg/cm²”를 “0.8MPa”로, “280mmH₂O”를 “2.8kPa”로, “0.8~1.3kg/cm²”를 “0.08~0.13MPa”로, “100kg”을 “980.7N”으로 “65kg”을 “637.5N”으로 하고, 동표의 호스의 성능란중 “굽힘력(kg)”을 “굽힘력(N)”으로, “5이하”를 “49이하”로, “8이하”를 “78.5이하”로, “11이하”를 “107.9이하”로 하며, 동목의 표의 다음의 주1)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목의 표의 다음의 주 2) (1)중 “5mmH₂O”를 “0.05kPa”로 하며, 동주 2) (2)중 “ $\Delta P = 5 \times \frac{\ell + 10D}{600 + 10D}$ ”를 “ $\Delta P = 0.05 \times \frac{\ell + 10D}{600 + 10D}$ ”로, “mmH₂O”를 “kPa”로 하고, 동호사목(8)중 “330mmH₂O”를 “3.3kPa”로 한다.



호스의 호칭지름	인장하중(N)	충격력(N·cm)	체결토크범위(N·cm)	
			동합금제	스테인레스강제
13A	1,765.3	1,323.9	2,746~4,217	2,746~5,590
19A	2,647.9	2,059.5	4,511.2~6,668.8	4,511.2~7,551.4
25A	3,628.6	2,059.5	5,001.6~7,551.4	5,001.6~8,434
32A	3,628.6	2,059.5	5,001.6~7,551.4	5,001.6~8,434

제9-1-20조제1호의 표의 사용압력란중 “1kg/cm²이상”을 “0.1MPa이상”으로, “0.1kg/cm²~1kg/cm²미만”을 “0.01MPa~0.01MPa미만”으로, “0.1kg/cm²미만”을 “0.01MPa미만”으로 하고, 동조제12호중 “5kg/cm²”를 “0.5MPa”로, “20kg/cm²”를 “2MPa”로 하며, 동조제26호중 “30kg/cm²”를 “3MPa”로, “8kg/cm²”를 “0.8MPa”로, “3kg/cm²”를 “0.3MPa”로 하고, 동조제27호의 표의 시험압력란중 “18.0kg/cm²”를 “1.8MPa”로, “1.5kg/cm²”를 “0.15MPa”로, “0.35kg/cm²”를 “0.035MPa”로, “0.084kg/cm²”를 “8.4kPa”로 하며, 동조제28호중 “0.7kg/cm²(차압 : 700mmH₂O)”를 “0.07MPa(차압 : 7kPa)”로, “0.32kg/cm²(차압 : 120mmH₂O)”를 “0.032MPa(차압 : 1.2kPa)”로, “280mmH₂O(차압 : 10mmH₂O)”를 “2.8kPa(차압 : 0.1kPa)”로 하고, 동조제29호의 표의 기준토오크란중 “60kg · cm”를 “588.4N · cm”로, “1,000kg · cm”를 “9,807N · cm”로, “1,800kg · cm”를 “17,652.6N · cm”로, “2,500kg · cm”를 “24,517.5N · cm”로, “3,500kg · cm”를 “34,324.5N · cm”로 하며, 동조제31호나목(9)중 “kg/cm² 또는 mmH₂O”를 “MPa 또는 kPa”로 한다.

제9-1-25조중 “330mmH₂O”를 “3.3kPa”로 한다.

제9-1-27조제4호라목중 “280mmH₂O”를 “2.8kPa”로 하고, 동조제5호가목중 “420mmH₂O”를 “4.2kPa”로 하며, 동호나목중 “1kg · cm”를 “9.8N · cm”로, “10kg”을 “98.1N”으로 하고, 동호라목중 “6kg”을 “58.8N”으로, “3kg”을 “29.4N”으로 하며, 동호마목중 “100mmH₂O”를 “1kPa”로, “10mmH₂O”를 “0.1kPa”로 하고, 동호사목중 “35kg”을 “343.2N”으로 하며, 동호아목중 “10kg · cm”를 “98.1N · cm”로 하고, 동호자목중 “15kg”을 “147.1N”으로 한다.

제9-1-33조제1호바목중 “30kg”을 “294.2N”으로 하고, 동조제2호다목중 “100kg/cm²”를 “10MPa”로, <표1>의 호칭압력란중 “10kg/cm²”를 “1MPa”로, “20kg/cm²”를 “2MPa”로, “25kg/cm²”를 “2.5MPa”로, “40kg/cm²”를 “4MPa”로, “50kg/cm²”를 “5MPa”로, “100kg/cm²”를 “10MPa”로 하며, 동조제3호가목의 <표2>의 인장강도란중 “인장강도(kg/mm²)”를 “인장강도(N/mm²)”로, “38”을 각각 “372.7”로, “35”를 “343.2”로, “41”을 “402.1”로, “45”를 “441.3”으로, “42”를 각각 “411.9”로, “49”를 “480.5”로, “56”을 “549.2”로, “63”을 “617.8”로, 동표의 내력란중 “내력(kg/mm²)”를 “내력(N/mm²)”로, “22”를 각각 “215.8”로, “18”을



“176.5”로, “25”를 “245.2”로, “27”을 “264.8”로, “24”를 “235.4”로, “26”을 “255”로, “28”을 “274.6”으로, “36”을 “353.1”로, “44”를 “431.5”로, “21”을 “205.9”로 하고, 동조제5호중 “ $2\text{kg}/\text{cm}^2$ 및 $6\text{kg}/\text{cm}^2$ ”를 “ 0.2MPa 및 0.6MPa ”로 하며, 동조제7호중 “ $20\text{kg}/\text{cm}^2$ ”를 “ 2MPa ”로, “ $30\text{kg}/\text{cm}^2$ ”를 “ 3MPa ”로 한다.

제9-1-38조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규격명	기호	구분					
		인장강도 ① (N/mm^2)	항복점 ① 또는 내력(N/mm^2)	허용응력 ① (N/mm^2)	압력제한 (MPa)	온도범위 ($^\circ\text{C}$)	신율 ① (%)
KS D 3710 탄소강단강품	SF40	392.3	196.1	98.1		-50~450	29
KS D 3752 기계구조용탄소강재	SM20C	402.1	245.2	93.2		-10~450	28
KS D 4101 탄소주강품	SC42	411.9	205.9	68.6		-5~350	24
KS D 4106 용접구조용주강품	SCW410	411.9	235.4	68.6		-5~350	24
KS D 4103 스테인리스주강품	SSC13A	441.3	186.3	96.1②		-196~800	30
KS D 4107 고온고압용주강품	SCPH1	411.9	205.9	82.4		-5~450	21
KS D 4111 저온고압용주강품	SCPL1	451.1	245.2	90.2		-45~350	21
KS D 4302 구상흑연주철품	GDC40	392.3	255	49	1.6	0~250	15
KS D 4303 흑심기단주철주조품	BMC340	343.2	196.1	43.2	1.6	-10~250	10
KS B 6231 부속서강인주철주조품	GCD-S	343.2	196.1	54.9	2.4	-30~350③	10
KS B 6231 부속서기단주철주조품	BMC35	411.9	274.6	65.7	2.4	-30~350③	18
KS D 5101 동 및 동합금봉	C3602BE	274.6		78.5		-196~200	15
KS D 5101 동 및 동합금봉	C3712BE	313.8		78.5		-196~200	15
KS D 6002 청동주물	BC6	196.1		39.2		-196~225	15

비고 : ① 40°C 의 수치로 표시 ② 70°C 이하에서도 허용응력이 변한다 ③ -10°C 미만에서는 충격시험이 필요하다

제9-1-41조제1호가목중 “ $1.4\text{kg}/\text{cm}^2$ ”를 “ 0.14MPa ”로, “ $280\text{mmH}_2\text{O}$ ”를 “ 2.8kPa ”로, “ $\pm 20\text{mmH}_2\text{O}$ ”를 “ $\pm 2\text{kPa}$ ”로 하고, 동호나목의 〈표 2〉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호중 “ $26\text{kg}/\text{cm}^2$ ”를 “ 2.6MPa ”로, “ $3\text{kg}/\text{cm}^2$ ”를 “ 0.3MPa ”로 하고, 동조제3호중 “ $14\text{kg}/\text{cm}^2$ ”를 “ 1.4MPa ”로, “ $1,500\text{mmH}_2\text{O}$ ”를 “ 15kPa ”로 하며, 동조제4호가목중 “ $1.4\text{kg}/\text{cm}^2$ ”를 “ 0.14MPa ”로 하고, 동조제5호중 “ $6\text{kg}/\text{cm}^2$ ”를 “ 0.6MPa ”로 하며, 동조제6호가목중 “ $500\text{kgf} \cdot \text{cm}$ ”를 “ $4,903.5\text{N} \cdot \text{cm}$ ”로 하고, 동호나목중 “ $14\text{kg}/\text{cm}^2$ ”를 “ 1.4MPa ”로, “ 40kgf ”를 “ 392.3N ”으로 하며, 동호다목중 “ $100\text{kgf} \cdot \text{cm}$ ”를 “ $980.7\text{N} \cdot \text{cm}$ ”로 한다.



〈표 2〉 입구압력과 출구압력 및 폐쇄압력 범위

온도(°C)	입구압력(MPa)	기준출구압력(kPa)	허용출구압력범위(kPa)	허용폐쇄압력범위(kPa)
0±2	0.02-0.1	2.8	±0.5	±1
20±2	0.02-0.3	2.8	±0.5	±1
50±2	0.1-0.6	2.8	±0.5	±1

제9-1-44조중 “4kg/cm²”를 “0.4MPa”로 한다.

제9-1-46조제1호마목의 〈표1〉의 압력란중 “4kg/cm²”를 “0.4MPa”로, “2.5kg/cm²”를 “0.25MPa”로, “2kg/cm²”를 “0.2MPa”로 하고, 동조제3호나목의 〈표2〉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호라목중 “0.3±0.1kg/cm²”를 “0.03±0.01MPa”로 하고, 동호마목중 “24.5±0.3kg/cm²”를 “2.45±0.03MPa”로, “40.8kg/cm²”를 “4.08 MPa”로 한다.

〈표 2〉 밸브의 회전력(단위 : N · m)

호칭(A)	38±3°C 일 때	-29±3°C 일 때
20이하	19.6	58.8
25	29.4	68.6
30	49	88.3
40	58.8	107.9
50	68.6	137.3
75	98.1	156.9
100	137.3	205.9
150	156.9	225.6
200	176.5	255

(비고) 밸브입구와 출구의 차수가 다른 경우에는 작은쪽을 기준으로 한다.

제9-1-50조중 “25kg/cm²”를 “2.5MPa”로 한다.

제9-1-51조제1호가목중 “10kg/cm²”를 “1MPa”로 하고, 동조제3호나목중 “10kg/cm²”를 “1MPa”로 하며, 동조제4호아목중 “25kg/cm²”를 “2.5MPa”로 하고, 동호자목중 “25kg/cm²”를 “2.5MPa”로,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표) 절연관의 호칭지름별 인장력 및 굽힘력기준

호칭지름		인장력(N)	굽힘력(N·m)	비고
A	B			
15	$\frac{1}{2}$	7,355.3	97.1	
20	$\frac{3}{4}$	9,120.5	143.2	
25	1	12,847.2	182.4	
32	$1\frac{1}{4}$	18,339.1	328.5	
40	$1\frac{1}{2}$	27,361.5	419.7	
50	2	34,324.5	493.3	
65	$2\frac{1}{2}$	35,501.3	542.3	
80	3	88,361.1	2,244.8	
100	4	128,864	3,781.6	
125	5	232,425.9	8,768.4	
150	6	228,699.2	9,553	
200	8	358,936.2	24,018.3	
250	10	403,656.1	27,603.8	
300	12	539,973.4	44,6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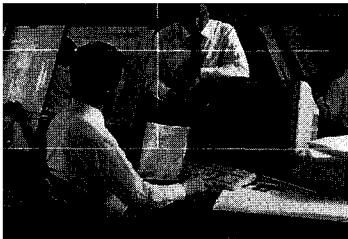
제9-1-56조제3호나목중 “34kg/cm²”를 “3.4MPa”로, “6kg/cm²”를 “0.6MPa”로 하고, 동호바목중 “69kgf·m”를 “676.7N·m”로 하며, 동호사목중 “8.2kg/cm²”를 “0.82MPa”로, “9.4kg/cm²”를 “0.94MPa”로 한다.

제9-1-61조제4호나목중 “4kg/cm²”를 “0.4MPa”로 하고, 동호라목중 “34kg/cm²”를 “3.4MPa”로, “6kg/cm²”를 “0.6MPa”로 하며, 동호마목중 “9.4kg/cm²”를 “0.94MPa”로 한다.

제9-1-67조제3호아목중 “60±10mmH₂O”를 “0.6±0.1kPa”로 하고, 동호차목중 “1,000mmH₂O”를 “10kPa”로, “420mmH₂O”를 “4.2kPa”로 하며, 동호카목중 “280mmH₂O”를 “2.8kPa”로 하고, 동호파목중 “100kgf·cm”를 “980.7N·cm”로 하며, 동조제5호가목(3)중 “3kg”을 “29.4N”으로 하고, 동조제8호가목(3)중 “3kg”을 “29.4N”으로 한다.

제9-1-71조제2호중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을 “국가표준기본법”으로 하고, 동호라목을 삭제한다.

제9-1-78조제4호가목중 “27kg/cm²”를 “2.7MPa”로 하고, 동호나목중 “50kg”을 “490.4N”으로 하며, 동호다목중 “18kg/cm²”를 “1.8MPa”로 하고, 동호라목중 “18kg/cm²”를 “1.8MPa”로 한다.



고 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3- 3호

제9-2-4조제4호나목(1)의 표의 가스압력구분란중 “330mmH₂O”를 “3.3kPa”로, “330mmH₂O 초과 1000mmH₂O 이하”를 “3.3kPa 초과 10kPa 이하”로, “1000mmH₂O 초과”를 “10kPa 초과”로 하고, 동표의 내 압시험란중 “550mmH₂O”를 “5.5kPa”로 하며, 동표의 기밀시험란중 “550mmH₂O”를 “5.5kPa”로 한다.

제9-2-5조제2호타목중 “mmH₂O”를 “kPa”로 한다.

제9장제2절제2관의 제목중 “가스보일러용 및 냉난방기용 버너”를 “강제혼합식가스버너”로 한다.

제9-2-9조중 “이 관은 규칙 제59조 및 동규칙 제6조 관련 별표 2”를 “이 관은 규칙 제59조, 별표 2제5호 및 별표 6제2호파목(4)”로 한다.

제9-2-12조제3호나목중 “1,000mmH₂O”를 “10kPa”로 하고, 동호라목중 “250mmH₂O”를 “2.5kPa”로 하며, 동조제4호나목중 “250mmH₂O”를 “2.5kPa”로 하고, 동조제5호나목(2)(다)중 “250mmH₂O”를 “2.5kPa”로 한다.

제9-2-18조제1호중 “420mmH₂O”를 “4.2kPa”로 하고, 동조제8호중 “8mmH₂O”를 “0.08kPa”로, “5mmH₂O”를 “0.05kPa”로 하며, 동조제11호중 “4kg/cm²”를 “0.4MPa”로, “17.5kg/cm²”를 “1.75MPa”로 한다.

제9-2-19조제1호라목중 “mmH₂O”를 “kPa”로 하고, 동호자목중 “kg/cm²”를 “MPa”로 한다.

제9-2-22조제2호가목중 “420mmH₂O”를 “4.2kPa”로 하고, 동호나목중 “330mmH₂O”를 “3.3kPa”로 한다.

제9-2-27조제1호다목중 “5kg”을 “49N”으로 하고, 동호너목중 “5kg/cm² 이상 7kg/cm² 이하”를 “0.5MPa 이상 0.7MPa 이하”로, “0.3~0.6kg/cm²”를 “0.03~0.06MPa”로 하며, 동조제3호라목중 “10kg”을 “98.1N”으로, “3kg”을 “29.4N”으로 한다.

제9-2-29조제1호가목중 “26kg/cm²”를 “2.6MPa”로 하고, 동호나목중 “15.6kg/cm²”를 “1.56MPa”로 하며, 동호라목중 “80kg/cm²”를 “784.6N/cm²”로 하고, 동호사목중 “20kg”을 “196.1N”으로 하며, 동조제2호가목중 “13kg/cm²”를 “1.3MPa”로 하고, 동호나목중 “2kg/cm²”를 “0.2MPa”로 하며, 동호다목중 “20kg”을 “196.1N”으로, “6kg”을 “58.8N”으로 한다.

제9-2-31조제5호중 “9kg/cm²”를 “0.9MPa”로 하고, 동조제8호라목중 “2kg/cm²”를 “0.2MPa”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